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13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김예지 · 김소희 · 고동진
송석준 · 김기현 · 백종현
김선교 · 서천호 · 최수진
김승수 · 신성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자들은 장시간 대기한 후에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편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시간이 2024년 기준으로 32.8일에 달함. 특히 야간 시간대의 경우 아이돌봄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방치될 경우 자칫하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시

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지정 또는 등록하는 소극적 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시설이 없을 경우 야간·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등 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6,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4시간 아이돌봄센터”란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로서 제11조의6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중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지역에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시설·인력·운영 등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 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을 “지정 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으로,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운영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1조의6에 따른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제26조 중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광역지원센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광역지원센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24시간 아이돌봄센터”란 24 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센 터로서 제11조의6에 따라 설 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u>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 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2 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 이돌봄사 등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u>

	<u>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6.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및 <u>24시간 아이돌봄센터</u> ----- ----- -----
7.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중 사자 교육훈련	7.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및 <u>24시간 아이돌봄센터</u>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u>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1. ----- <u>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및 <u>24시간 아이돌봄센터</u> ----- ----- -----
2. <u>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u>	2. ----- <u>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u>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4. (생략)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

3.·4. (현행과 같음)

5.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관할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지역에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등록 취소 이력 등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의 설치·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시설·인력·운영 등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 또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장-----
---.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이라 한다)는-----.

-----.

③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④ (생 략)

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
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
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
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
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④ (현행과 같음)

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
터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

①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운영 기준-----
-----.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만족도 조사) ① 여성가족
부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
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
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
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장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보유·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2의2. (생략)

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관 등 만족도 조사) ① -----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
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7. (생 략)

③ ~ ⑧ (생 략)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
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
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
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의 설치·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
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2의3. 제11조의6에 따른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비용의 보조) -----

-----광역지원센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
시간 아이돌봄센터-----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
-----광역지원센터, 지
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24시간 아이돌봄센터-----

-----.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 및 명령) -----

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등-----

-----.

② (생 략)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 센터, 광역지원센터,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누설금지)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등----- ----- ----- ----- ----- ----- ----- -----.
---	--